

# 한국체육대학교 인사운영규정

제정 2010. 9. 6. 규칙 제534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일반직공무원, 기능직공무원(이하 '공무원'이라 한다.)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고 한다.)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,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.

“인사담당부서의 장”과 “교육담당부서의 장”이라 함은 본 대학교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말한다.

**제4조(임용권의 위임)** ①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위임전결규정(이하 '위임전결규정'이라 한다.)에 의한다.

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.

1. 정원의 조정, 승진 등 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
2. 대학의 보직관리를 위해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**제5조(인사관리의 원칙)** ① 승진, 교육훈련,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,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.

② 부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.

**제6조(인사기준의 공개)** 임용권자(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.

## 제2장 인사위원회

**제7조(설치)** 본 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임용(승진, 파견, 징계 등)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'인사위원회'를 둔다.

**제8조(위원회 구성 및 기능)**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통승진심사위원회 :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2. 근무성적평정위원회 :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3. 공적심사위원회 :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정부표창규정(대통령령)에 의한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4. 보통징계위원회 :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공무원 징계령(대통령령) 제7조·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5. 성과관리위원회 :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6. 직무관련인사심의위원회 : 1호~5호를 제외한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**제9조(인사위원회 구성)** ① 기능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연직과 총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한다.

③ 지명직 위원은 5급(과장급)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6급(팀장급)으로 할 수 있다.

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지명하되, 심사대상자의 근무성적, 능력 및 인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지명토록 하고 가급적 특정 지역·분야 출신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 다만,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5급(과장급) 또는 6급(팀장급) 중에

서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

**제10조(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·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11조(간사)**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인사담당 팀장이 된다. 다만 공적심사위원회, 보통징계위원회, 8급이하(기능직공무원 포함) 공무원 승진심사 등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.

**제12조(기밀유지)** 인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

**제13조(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)**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,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.

**제14조(평가단위)** ①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평가단위는 직제상 행정조직 운영단위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15조(평가자 및 확인자)** 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1과 같다.

**제16조(근무성적평가)**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며,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,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,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.

②근무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각 평가단위별 서열 명부 및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하여, 전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아래 비율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,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의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한다.

등급(인원비율)	평가 가능점수
수 (2할)	64점 이상 ~ 70점 이하
우 (4할)	48점 이상 ~ 64점 미만
양 (3할)	34점 이상 ~ 48점 미만
가 (1할)	34점 미만

※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는 경우 차상위 등급과 합산 가능

③기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7조(성과계약 등 평가)**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 항목,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사운영규정에 의한다.

②5급이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을 준용하되 세부기준은 별도지침에 의한다.

####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

**제18조(승진후보자명부 작성)** ①인사담당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.

②인사담당부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임용예정 직렬·계급별로 작성한다.

**제19조(평정점수 산정)**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, 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,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. 단,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구 분	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	근무성적평가	경력평정	가점
만 점	100점	70점	30점	5점

②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반영기간	반영비율
6·7급, 기능7급 이상	최근 2년	최근 1년 이내 50%, 최근 1년전~2년 50%
8급, 기능 8급 이하	최근 1년	최근 1년 100%

**제20조(경력평정)**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총무과장이 된다.

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.

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,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.

계급	경력평정 가능기간	만점 도달기간	월경력 평정점	
			기준기간 이전경력	기준기간 이후경력
6급, 기능6급	최근 12년	10년(120월)	최근72월경력 : 0.39점	72월이전경력 : 0.04점
7급, 기능7급 이하	최근 10년	8년(96월)	최근60월경력 : 0.47점	60월이전경력 : 0.05점

- 제21조(가점평정)**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,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,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가점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인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5장 승진

**제22조(승진심사 시기)** 승진심사는 직렬·계급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계급별 결원,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**제23조(승진심사 기준)**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.

1.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
2.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
3. 최근 1~3년간 업무추진실적
4. 인품, 청렴성, 경력 등 기타사항

②승진자의 당해 계급별 본 대학교 최소 근무년수는 아래와 같다.

승진임용예정계급	당해 계급	최소 근무년수
6급·7급	7급·8급	1년

③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④승진심사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

**제24조(특별승진)** ①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2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 예정인원의 10%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.

- ②6급이상은 철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교육과학기술 업무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- 제25조(역량평가 등)** ① 총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, 동료, 하위 공무원에 의한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승진임용, 보직관리, 성과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할 수 있다.
  - ③역량평가 등의 평가방법 및 절차,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,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보직 관리

- 제26조(보직관리 원칙)**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·교육훈련·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.
- ②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한다.
  -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.
  - ④총장이 인정하는 전문분야 보직에 있어서는 직위공모 등을 통하여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.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별표2와 같다.

- 제27조(균형 있는 인재활용)** ① 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성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.
-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③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장애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의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28조(정기 전보)**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2회(4월, 10월)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- 제29조(순환 전보)**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태만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.

②제1항의 순환 전보는 개인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하며, 총장이 인정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순환전보 한다.

1. 전문분야에 보직된 자
2.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
3. 기타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④부득이한 사유로 전보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유예신청서를 매년 2월말까지 총무과에 제출하여 직무관련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받을 수 있다.

**제30조(보직경로)** 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서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하고, 동일 부서내 팀단위 이동도 전보로 간주한다.

②전보원칙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근무하지 않은 부서를 우선 전보한다.
2. 성별, 연령별, 부서별, 업무별 제한 없이 전보한다.
3. 전 부서를 근무한 자는 오래된 부서 순으로 전보한다.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보한다.

**제31조(필수실무관의 보직)**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결원보충 및 전입 등)** ①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 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.

②본 대학교 전입은 공개적인 모집 절차 및 전입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전입예정자의 선발 심사는 직무관련 인사심의위원회에서 한다.

## 제7장 교육훈련

**제33조(신규·전입자 교육)** ①교육담당부서는 7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본 대학교의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, 정책 현장 체험,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7·9급 신규 임용예정자는 가급적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34조(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)** ①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교육훈련시간(이하, '필요 교육훈련시간')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②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기준을 준용한다.

**제35조(교육훈련비 지원)**①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성과,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직무개발 연구, 동호회, 학습동아리 등 상시학습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6조(부서장의 교육훈련 책임)**부서의 장은 개인의 역량 개발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요청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37조(인사업무의 지도·감독)**총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·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 상태를 확인·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38조(유사경력 환산율)**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서 위임된 유사경력 환산율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.

## 제8장 기 타

**제39조(기타)**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상시학습시간 인정기준,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등 관련 내용은 법령,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운영규정 등에 의거 적용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근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부서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되,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한다.

③(다른 규정의 폐지) 한국체육대학교보통승진임용심의위원회규정(규칙 제374호)은 이를 폐지한다.

[별표1]

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 
(제15조 관련)

대 상	평정자	확인자	비 고
6급이상 공무원	부서의 장	총 장	
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	부서의 장 (사무국은 총무과장)	사무국장	

[별표2]

총장이 인정하는 전문분야 보직  
(제26조 제4항 및 제29조 관련)

부서명	담당직무(분야)	순환전보 제한기간	비 고
교무과	· 수업 · 학적업무	3년이상	· 대학원 포함
총무과	· 회계업무(보수 등)	3년이상	경리부서 총경력
기획실	· 국제교류, 홍보업무	3년이상	

※ 이외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 또는 인  
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[별표3]

□ 유사경력(환산율 5~10할) (\*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)

가) 전문·특수경력(환산율 8할이내, 단, ③,④는 8할)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① 민간 전문 분야근무 경력	○ 영 (별표 16)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·별정직·특정직 공무원 등	○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○ 상법에 의한 합명·합자·주식·유한 회사 ○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○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○ 외국의 국가기관 (지방자치단체포함), 공공기관, 법인 등	○ 자격증·면허증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-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-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* 자격(면허)증·박사 학위 취득일 :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당해 자격이 부여된 시점 *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자격증으로서 별표4 “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 계급 기준표”를 적용함. ○ 예시되지 않은 분야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※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 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(업무의 전문성, 근무기간, 기업체의 규모, 근무인원, 근무형태 등)을 고려하여 8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함.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(면허증포함)중</li> <li>- 법령에 의하여 국내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</li> <li>- 별표 4의 관련 자격증·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</li> <li>-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</li> <li>○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</li> </ul>
<p>② 교육·연구 기관 근무 경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직 공무원중</li> <li>- 기술직렬 공무원 (임용령 제2조제7호)</li> <li>○ 연구 및 기술분야의 별정직·특정직 공무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기관</li> <li>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</li> <li>○ 연구기관(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)</li> <li>-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</li> <li>-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·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</li> <li>- 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함.</li> <li>※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</li> </ul>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</li> <li>○ 외국의 대학(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)이상의</li> <li>- 교육기관·대학부설 연구기관</li> <li>○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</li> </ul>	<p>※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(업무의 전문성, 근무기간, 근무형태, 기업체의 규모, 근무인원 등)을 고려하여 8할이내(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이내)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</p> <p>* 초·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</p> $= \text{근무기간} \times \frac{\text{주당 실근무시간}}{\text{초·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}}$
<p>③ 언론기관 근무경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(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)</li> <li>○ 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, 통신사</li> <li>○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</li> <li>○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으로 지상파방송에 한함</li> <li>*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방송국</li> <li>○ 외국의 일간신문사·통신사·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간신문, 통신 또는 방송의</li> <li>- 보도·편집·제작·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정규직원으로</li> <li>- 상근한 경력</li> </ul>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</li> <li>·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</li> <li>· 국가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</li> </ul>	○ 법인체 · 회사등	○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

#### 나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(환산율 5~10할)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① 잡급직원규정(대통령령 제7265호) 및 지방잡급직원규정(대통령령 제7976호)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(8할)	○ 영 [별표 16]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· 별정직 · 특정직 공무원등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잡급직원규정('75.1.1-'81.12.31)에 의한 잡급경력</li> <li>○ 지방잡급직원규정('76.1.1-'82.3.4)에 의한 잡급경력</li> <li>*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</li> </ul>
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, 촉탁, 잡급등 근무경력 (8할)	"	"	○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, 잡급, 촉탁등으로 2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<p>③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, 촉탁,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16의 2. 나, (1)외의 경력으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(5 할)</p>	<p>○영〔별표 16〕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·별정직·특정직 공무원등</p>	<p>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</p>	<p>○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초·중·고 육성회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 경력</li> <li>-경찰관서의 방법원, 교통지도원 근무경력</li> <li>-직업안정법 제4조의4,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 근무경력</li> <li>-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경력</li> </ul> <p>○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</p> <p>○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, 잡급, 촉탁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, 잡급, 촉탁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</p>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- 경찰·소방공무원(8할) - 경찰·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등 공무원(10할)	○영〔별표 16〕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 받는 일반직·별정직·특정직 공무원등	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	○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(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, 실무수습기간은 포함)
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(8할)	〃	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	○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한 경력
⑥ 청원산림보호 직원 근무경력(8할)	〃	〃	○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상근한 경력
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(8할)	〃	〃	○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한 경력
⑧ 위원회의 상임·전임 직원 근무 경력(8할)	〃	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. 다만,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	○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* 계약직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
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(각령 제901호)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(8할)	〃	○재외공관	○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한 경력

다) 기타경력(환산율 5~7할)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(7할)	○ 영〔별표 16〕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 받는 일반직, 별정직, 특정직등 공무원	○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	○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
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(7할)	”	○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·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·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	○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
③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(7할)	”	○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○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(별표 5 참조)	○ 행정·경영·연구·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
④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(7할)	”	○ 서울올림픽대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○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서울장애자올림픽 대회조직 위원회	○ 정규 직 원으로 상근한 경력

경력구분	합산대상공무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⑤ 사립학교 교·직원 근무경력(7할)	○영〔별표 16〕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, 별정직, 특정직등 공무원		○정규교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
⑥ 경찰대학경력(5할)	○「경찰대학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	○「경찰대학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	○「경찰대학설치법」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
⑦ 국·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(7할)	○영〔별표 16〕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, 별정직, 특정직 등 공무원	○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의한 국·공립학교	○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조에 의해 국·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
⑧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(5할)	”	○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의한 사립학교	○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전 보 유 예 신 청 서

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

상기 본인은 인사운영규정 제29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 
전보 유예를 원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유예사유 :

○ 유예신청기간 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~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(    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